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93 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소병훈・박지원・안호영

안태준ㆍ허 영ㆍ김교흥

노종면 • 용혜인 • 이병진

송재봉 • 윤준병 • 한정애

김태년 • 권칠승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.

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,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,880원(시급 9,860원, 8시간 노동 기준) 대비 약 70% 수준임. 또한,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.1 ~1.9%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 시·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,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,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0조의2).

법률 제 호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 중 "결과를"을 "결과 및 물가상승률,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"로 하고, "실시할 수 있으며"를 "실시하여야 하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대하여는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·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0조의2(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제20조의2(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) ① (생 략) 수립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 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-----결과 및 물가상승 률,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-----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· 연구 -----실시하여야 하며-등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 는 민간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. (4) -----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 모·생활실태 파악,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 태조사를 실시 · 공표하여야 한 다. <단서 신설> ---. 다만, 제15조에 따른 자활 급여에 대하여는 1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 · 공표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